

한국의 FTA전자상거래규정 비교·분석

A Comparison & Analysis of Electronic Commerce of Korea's FTA

김윤근(Yun-keun Kim)

전남대학교 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주저자

박복재(Bok-Jae Park)

전남대학교 물류통상학부 교수, 교신저자

목 차

I. 서론	V. 결론
II. WTO의 입장과 선행연구	참고문헌
III. 한국의 FTA전자상거래규정의 주요내용 및 비교	ABSTRACT
IV. 분석 및 시사점	

국문초록

국제무역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개념정의와 적용규범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WTO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에 잠재적 무관세를 시행하는 한편 작업계획(Work program)을 통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국은 FTA 등의 협정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이 체결·시행하고 있는 FTA 중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을 비교·분석하였다. 한국의 FTA전자상거래 규정은 무관세, 다른 장(chapter)의 규정과 충돌 시 다른 장의 규정 우선, 전자인증,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보호 등에 대해서는 공통적이지만, 전자상거래의 대상을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있고, 전자상거래의 분류 및 적용규범에 대해서는 유보하고 있으며, 비차별대우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은 WTO 등의 연구에 참여하고, 미국, EU, 중국 등이 체결·시행하고 있는 FTA전자상거래 규정을 분석하여 적극적·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전자상거래, 자유무역협정, 세계무역기구, 디지털 재화, 관세

I. 서론

국제무역은 유형적인 재화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지만, 최근 IT·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무형적인 재화를 디지털 방식을 통해 교역하는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과거에는 물리적 형태를 가진 재화를 운송·통관하는 과정에서 각종 종이서류를 교역당사자 간에 교환하고 세관 등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형태였지만, 현재는 서비스,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전송 등 형태가 없는 상품을 교역하면서 ‘전자문서교환(Electric Data Interchange; EDI)’을 통해 각종 서류를 교환하고 제출하는 ‘종이 없는 무역(paperless trade)’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에 WT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는 한편, FTA협정 등을 통해 자국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주요 논의 주제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범·제도적 측면’으로서 전자상거래의 대상 중 ‘무체물인 콘텐츠’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리고 ‘재화’로 분류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서비스’로 분류하여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이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경제적·재정적 측면’으로서 무체물의 전자상거래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 부과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부과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관세부과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적·재정적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가 논의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체결·시행하고 있는 FTA에서 각기 상이한 내용으로 전자상거래를 규정하고 있는 바, 무체물의 수출입은 관세법상 수출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세관 수출신고 대상이 아니며 수입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¹⁾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²⁾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현재 한국이 체결·시

- 1) 무체물이 모두 무관세인 것은 아니다. 무체물인 ‘전기에너지’는 고유의 HS코드(2716)를 가지고 있으며 관세율도 정해져 있다. ‘전기에너지’의 기본관세율과 WTO협정관세율은 5%이며, FTA협정관세율은 중국만 2%이고 나머지는 모두 0%로서 사실상 무관세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의 권리사용료’도 과세가격에 포함시킴으로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판례(대법원 2016. 8. 30. 선고)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는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이 상표권 등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2)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0조(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확인) ②영 제23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사실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수출입확인신청서에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수출입 사실의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 사실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수출입확인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행하고 있는 각 국가별 FTA의 전자상거래 규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이 취해야 할 현실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의 토대가 되고자 한다.

II. WTO의 입장과 선행연구

1. WTO의 입장

WTO는 1998년 5월 2차 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WTO 각료선언(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을 채택하여 국제전자상거래(global electronic commerce)에 관해 광범위한 작업계획(work program)을 수행하기로 하는 한편 전자상거래에 대해 잠정적 무관세를 채택하였으며³⁾, 가장 최근의 10차 각료회의에서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⁴⁾ 또한 1998년 9월 ‘전자상거래에 관한 작업계획(work programme on e-commerce)’을 채택하여 일반이사회를 중심으로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 무역개발위원회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현재까지 논의된 주요주제는 다음과 같다.⁵⁾

1)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의 정의⁶⁾

WTO의 작업계획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및 운송’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대상에 유형적인 제품(goods)과 무형적인 서비스(services)를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작업계획의 목적만을 위해서 (Exclusively for the purposes of the work programme)’라는 표현처럼 일반적인 규정이 아니라 ‘작업계획에서만’ 적용되며, 각 기관에서는 관련문제에 관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각 기관의 주요 연구사항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는 ‘전자상거래’를 GATS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다루는 문제에 대해

3) WT/MIN(98)/DEC/2. MINISTERIAL CONFERENCE Second Session Geneva, 18 and 20 May 1998

4) WT/MIN(15)/42/WT/L/977. Ministerial Conference Tenth Session Nairobi, 15-18 December 2015

5)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Adopted by the General Council on 25 September 1998

6)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1.3 Exclusively for the purposes of the work programme, and without prejudice to its outcome, the term “electronic commerce” is understood to mean the production, distribution, marketing, sale or delivery of goods and services by electronic means. The work programme will also include consideration of issues rela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infrastructure for electronic commerce.

관세와 분류문제 및 GATS 제1조(범위), 제2조(최혜국 대우), 제16조(서비스의 전자적 공급에 대한 시장접근 양허), 제17조(내국민대우)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외 투명성, 개도국의 참여 증진, 국내규제, 경쟁, 사생활 보호, 대중 교통통신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사용에 대한 접근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⁷⁾

상품무역이사회에서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GATT1994에 대해 관세와 분류문제 및 시장접근의 문제, GATT1994의 제7조⁸⁾를 적용할 때 발생하는 과세가격 평가의 문제,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문제, 관세 등 세금과 수수료의 문제, 전자상거래의 표준 및 원산지 규정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⁹⁾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저작권과 관련권리의 보호와 실행, 상표권의 보호와 실행, 신기술과 기술에 대한 접근 등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¹⁰⁾

무역개발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가 무역과 경제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개도국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 유형재화의 유통에 사용되는 전통적인 수단에 대해 개도국에 미칠 영향, 전자상거래의 개도국에 대한 재정적 함의 등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¹¹⁾

3) WTO의 기본입장과 합의도출의 어려움

현재까지 WTO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작업계획에서만 적용되는 정의규정을 두고 있을 뿐 분류 및 적용법규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의 대상인 ‘무체물의 콘텐츠’를 ‘상품으로 분류하여 GATT를 적용할 것인지, 서비스로 분류하여 GATS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렇게 합의도출이 어려운 이유는 GATT와 GATS 사이에는 <표1>과 같이 중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7)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2.1

8)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가격(Actual value)’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관세평가의 일반원칙 및 회원국이 관세평가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하고 있다.

9)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3.1

10)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4.1

11)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5.1

〈표 1〉 GATT와 GATS 규범의 주요 차이점

	GATT 1947&1994	GATS
최혜국 대우	특별한 상황에서는 주어진 의무로부터 면제	최혜국대우에 대하여 일정 기간 국가별 면제 가능
내국민 대우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일반적 의무로 국내조치로 한정	각국별로 개방한 서비스에만 부과되는 의무
관세	회원국들이 무관세로 규정하지 않았을 때 허용되며, ITA에 서명한 WTO회원국들 간에는 무관세 적용 가능	GATS는 관세를 다루지 않으며, 한 국가가 무제한적인 자국민대우를 보장할 때 차별적인 제한은 허용되지 않음
쿼터	특정 긴급 상황 하에서만 허용되는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	제한적 시장접근이 허용되었을 경우 용인
투명성	WTO기술장벽협정과 같은 GATT협정에 의해 강화된 의무	GATS하에서 GATT보다는 완화된 의무
규제적 조치	불필요한 무역제한적 규제를 억제하고 국제적 표준의 사용을 장려하고자 기술표준과 위생검역조치 영역에 존재	불완전한 규제적 원칙이지만 이러한 원칙이 존재하도록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 부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별조건 존재	특별한 GATS 조건범위는 GATT보다 좁음
보조금규범	있음	없음
반덤핑규범	있음	없음
세이프가드	있음	없음
무역관련 투자협정	있음	없음

자료 : 윤창인(2007), p.37.

WTO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대상인 ‘무체물의 콘텐츠’에 대해 서비스로 분류하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¹²⁾ 하지만 분류 및 적용법규의 문제는 각국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이해득실의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WTO에서 일반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개별적인 FTA협정 등을 통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¹³⁾

12) 이러한 WTO의 입장은 작업계획의 서비스무역이사회와 임무로서 ‘전자상거래를 GATS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다루는 것에 관한 연구’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다. 반면 상품무역이사회와 임무로서 ‘GATT1994 조항의 적용에 관한 연구’이라는 표현을 통해 간접적인 적용이라는 점은 암시하고 있다.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2.1 “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shall examine and report on the treatment of electronic commerce in the GATS legal framework.”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3.1 “The Council for Trade in Goods shall examine and report on aspects of electronic commerce relevant to the provisions of GATT 1994, the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covered under Annex 1A of the WTO Agreement, and the approved work programme.”

13) 전자상거래의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은 ‘상품’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EU등 유럽은 ‘서비스’라는 입장을 주도하고 있다.

2. 학계의 선행연구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법·제도적 측면의 ‘전자상거래의 개념, 분류 및 적용법규 등에 관한 논의’와 경제적·재정적 측면의 ‘관세 부과 가능성 및 효과에 대한 논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전자상거래의 개념, 분류 및 적용법규 등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Lior Herman(2010)¹⁴⁾은 지역협정 상의 전자상거래 규정이 어느 정도까지 다자화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지역협정의 다자화에 대해 2가지 방향 즉 상향식 다자화 방식과 하향식 다자화 방식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권현호(2004)¹⁵⁾는 디지털제품이 상품 또는 서비스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적용규범이 GATT인지 GATS인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논란이라는 점을 밝히고, 한국의 경우 GATT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철호(2014)¹⁶⁾는 전자무역을 국제무역관습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무역거래 당사자의 역량 강화, 전자무역 인프라의 글로벌화 추진, 국제통일 법규범의 제정 등을 주장하였다.

김정곤·나승권·장종문·이성희·이민영(2015)¹⁷⁾은 디지털 상거래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논의를 검토하고, 한국의 제도를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한민정은 기존의 FTA 전자상거래 규정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TPP전자상거래 부분의 관세, 시정각서비스의 비차별, 전자인증 등에 대해 한국이 취해야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경제적·재정적 측면에서 ‘관세 부과 가능성 및 효과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Susanne Teltscher(2001)¹⁸⁾는 물리적 형태의 교역이 전자적 형태로 대체될 경우 무역, 관세 기타 수입관련 조세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박형래(2011)¹⁹⁾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과세방법으로서 OECD가 제시한 4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금융기관에 의한 원천징수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박복재·문영수(2012)²⁰⁾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과세, 특히 관세의 영향을 비교·조사하여

14) “Multilateralising Regionalism: The Case of E-Commerce”, OECD Trade Policy Papers, No. 99, OECD Publishing.

15) WTO에서의 디지털 상품교역에 대한 적용규범, 국제법학회논총 49(1), 2004.4, 87-108

16) 국제무역 패러다임의 변화와 전자무역관습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15(1), 2014.2, 123-142

17) 국제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5-18, 2015.12

18) From Physical to Digital Delivery: Definition, Scope and Tariff Revenue Implications of Electronic Goods Trading, Proceedings of the 34th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

19)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관세부과 원리의 쟁점과 과세방법 고찰,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1.4, 53-68

20) 디지털 콘텐츠 교역의 확산이 조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가 간 비교 연구, 전자무역연구, 제10권 제4호

선진국과 개도국에 대한 조세수입의 영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밝혔다.

박영기·김종섭(2015)²¹⁾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입으로 인한 관세, 조세, 국내총생산 등의 효과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나누어 비교·검토하였다.

한편 개별 FTA협정의 전자상거래 규정에 대한 연구도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서민교(2008)²²⁾는 한·미FTA 제15장의 조문내용을 평가하고 정책적 함의를 고찰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WTO를 중심으로, ‘법·제도적 측면’의 논쟁, ‘경제적·재정적 측면’의 효과에 집중하였으며, 개별국가가 FTA협정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어떤 조항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지 등의 구체적·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체결·시행하고 있는 FTA의 전자상거래 규정을 비교·분석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논의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III. 한국의 FTA 전자상거래규정의 주요내용 및 비교

현재 한국이 체결하여 발효 중인 15개의 FTA 중 ‘전자상거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FTA는 9개, 즉 싱가포르, EU, 페루,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와 맺은 FTA이며, 각 FTA의 전자상거래의 장에 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싱가포르 FTA

제14장(전자상거래)에서 ‘디지털제품’, ‘전달매체’, ‘전자적 전송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된’, ‘전자적 수단’의 이용’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며,²³⁾ ‘디지털제품의 수입에 대해 관세, 수출입에 드는 비용, 부과금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이지만, 국내부과금은 부과할 수 있으며, 디지털제품을 담은 수입 전달매체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⁴⁾

21)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국제거래 확산에 따른 관세누수 추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6권 4호(2015년 12월 28일), 71-89

22) 전자상거래에 관한 한·미 FTA의 평가와 향후 과제, e-비즈니스연구 9(2), 2008.6, 87-110

23) 제14.1조 정의: ‘디지털제품’이라 함은 전달 매체에 고정되거나 전자적으로 전송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적으로 부호화된 컴퓨터 프로그램·문자열·동영상·이미지·녹음 또는 그 밖의 제품을 말한다(금융상품은 제외). ‘전달매체’라 함은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방식으로 디지털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물리적 객체로서 디지털 제품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인식·재생산 또는 통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광매체·플로피디스크 또는 자기테이프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전자적 전송’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된’이라 함은 전자기적 또는 광학적 수단을 이하는 디지털제품의 전달을 말한다.
‘전자적 수단의 이용’이라 함은 컴퓨터 및 디지털 공정의 사용을 말한다.

또한 내국민대우를 규정하고 있으며²⁵⁾, 소비자가 편성에 관해 선택권이 없는 콘텐츠에는 적용되지 않고,²⁶⁾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은 관련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⁷⁾

2. 한·EU FTA

전자상거래를 독립된 장으로 다루지 않고 제7장(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에서 서비스 무역, 법인의 설립 등과 함께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재화에 대해 ‘서비스’의 일부로 간주하는 견해를 반영하고 있지만, 한국은 각주규정을 통해 ‘서비스 무역’인지 ‘상품 무역’인지에 대한 견해표명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였다.²⁸⁾

그 외 전자상거래 발전 증진 합의 및 자료 보호의 국제기준에 양립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전달²⁹⁾에 대해 무관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규제 문제에 관한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3. 한·페루 FTA

제14장(전자상거래)에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적용가능성을 인정하며,³⁰⁾ 다른 장과 불합치가 있는 경우 다른 장이 우선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³¹⁾ 나아가 전자적으로 전달되거나

24) 제14.4조

25) 제14.4조 제3항: 당사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디지털제품에 대하여 그 밖의 동종 디지털제품에 부여한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가. 다음 각 의 어느 하나에 근거하는 것

(1) 불리한 대우를 받는 디지털제품이 타방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창작·생산·출판·저장·전송·계약·위탁되거나 또는 상업적 조건으로 처음으로 이용 가능하게 되었던 경우

(2) 그러한 디지털제품의 저작자·실연자·생산자·개발자 또는 배급자가 타방 당사국의 인민 경우.

나. 그 영역 내에서 창작·생산·출판·저장·전송·계약·위탁되었거나 또는 상업적인 조건으로 처음으로 이용 가능하게 된 다른 동종 디지털제품을 달리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것

26) 제14.2조 제2항: 이 장은 청각적, 시각적 또는 그 모두의 수신을 위해 콘텐츠 제공자에 의해 편성되고 콘텐츠 소비자가 그 편성에 대하여 선택권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일련의 문자열·동영상 또는 그·이미지·녹음 또는 그 밖의 제품의 전자적 전송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7) 제14.3조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전자적 수단을 이하는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조치에 제9장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제10장 (투자) 및 제12장 (금융서비스)의 관련 규정에 포함된 의무의 범위에 해당되고 그러한 의무에 적용될 수 있는 예외를 따르고 의무가 제9.6조 및 제10.9조에 따른 그러한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을 확인한다.

28) 각주 39) 이 장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었다는 것이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전달이 서비스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또는 상품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29) ‘디지털제품’이 아니라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전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디지털재화에 대해 ‘서비스’로 간주하는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다.

30) 한·페루FTA 14.1조

31) 한·페루FTA 14.2조

수행되는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제9장(투자), 제10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제 12장(금융서비스)의 관련 규정에 포함된 의무의 대상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로 인한 논란 가능성을 보완하고 있으며, 디지털제품의 수출입에 대해 관세,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적용하지 않지만, 내국세 또는 국내 부과금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³²⁾

그 외 소비자 보호, 종이 없는 무역, 개인정보 보호, 전자인증 및 디지털 인증서, 협력³³⁾ 및 정의규정을 통해 ‘디지털제품이란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된 컴퓨터 프로그램, 문자열, 동영상, 이미지, 녹음물 및 그 밖의 제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³⁴⁾

4. 한·미 FTA

제15장(전자상거래)에서 서비스와 디지털제품을 분리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에 대해서는 제11장 내지 제13장(투자, 국경 간 서비스무역, 그리고 금융서비스)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³⁵⁾ 디지털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규정하는 동시에 불리한 대우의 금지 및 예외, 콘텐츠제공자에 의해 편성되고 소비자가 그 편성에 선택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 등을 두고 있다.³⁶⁾

특이한 점은 무관세를 적용하는 디지털제품을 ‘전달매체에 고정된 디지털제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그 전달매체에 고정된 디지털제품,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된 디지털제품’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추상적인 디지털제품과 디지털제품을 전달하는 매개체를 분명히 구별하는 동시에 유일하게 디지털제품에 대해 ‘원산지 상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³⁷⁾ 이러한 견해는 디지털제품에 대해 ‘서비스’보다는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추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³⁸⁾

그 외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³⁹⁾, 온라인 소비자 보호⁴⁰⁾, 종이 없는 무역⁴¹⁾,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⁴²⁾, 국경 간 정보흐름⁴³⁾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의규

32) 한·페루FTA 14.4조

33) 한·페루FTA 14.5조~14.9조

34) 한·페루FTA 14.10조

35) 한·미FTA 15.2조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 전자적으로 전달되거나 수행되는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제 11장 내지 제13장(투자, 국경간 서비스무역, 그리고 금융서비스)의 관련 규정에 포함된 의무의 대상이다.

36) 한·미FTA 15.3조 제1항~제6항

37) 한·미FTA 15.3조 제1항

38) 다만 양국은 15.9조(정의)의 각주규정(“디지털제품의 정의는 전자적 전송을 위한 디지털제품의 무역이 상품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또는 서비스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당사국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 된다.”)을 통해 디지털제품의 무역이 상품무역인지 서비스무역인지 여부는 유보하였다.

39) 한·미FTA 15.4조

40) 한·미FTA 15.5조

41) 한·미FTA 15.6조

정44)을 통해 ‘전달매체’ ‘디지털제품’ ‘전자서명’ ‘전자적 전송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된’ ‘무역행정문서’를 정의하고 있다.

5. 한·호주 FTA

제15장(전자상거래)에서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에 대해서는 제7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8장(금융서비스) 및 제11장(투자)에 규정된 의무의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⁴⁵⁾, 양 당사국 간 전자적 전송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⁴⁶⁾, 국내규제⁴⁷⁾,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⁴⁸⁾, 온라인 소비자보호⁴⁹⁾, 종이 없는 무역⁵⁰⁾,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⁵¹⁾,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서신⁵²⁾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인증, 전자서명, 전자적 전송, 개인정보, 무역행정문서,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서신’ 등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⁵³⁾

이러한 견해 즉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에 대해서는 서비스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디지털 재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전자적 전송’이라고 규정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디지털재화’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즉 다른 FTA에서 ‘디지털재화’라는 용어로 다루고 있는 ‘전자적 전송’은 서비스의 특수한 형태 또는 재화도 서비스도 아닌 특수한 제3의 상품으로 간주하면서 서비스 관련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태도이다.

6. 한·캐나다 FTA

제13장(전자상거래)에서 ‘전자적 수단으로 행하여지는 무역이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10장(금융서비스), 제11장(통신) 및 제14장(정부조달)을 포함한 이 협정의 규정을 조건으로 함을 확인한다.’⁵⁴⁾고 규정하는 동시에 ‘다른 장

42) 한·미FTA 15.7조

43) 한·미FTA 15.8조

44) 한·미FTA 15.9조

45) 한·호주FTA 15.2조

46) 한·호주FTA 15.3조

47) 한·호주FTA 15.4조

48) 한·호주FTA 15.5조

49) 한·호주FTA 15.6조

50) 한·호주FTA 15.7조

51) 한·호주FTA 15.8조

52) 한·호주FTA 15.9조

53) 한·호주FTA 15.10조

54) 한·캐나다FTA 13.1조 제1항

과 불합치하는 경우 다른 장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⁵⁾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관세, 수수료, 부과금 등은 부과하지 않지만, 내국세, 국내부과금 등은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⁵⁶⁾ 개인정보 보호⁵⁷⁾, 종이 없는 무역 행정⁵⁸⁾, 소비자 보호⁵⁹⁾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의 규정을 통해 ‘전자적으로 전달된, 디지털제품, 개인정보, 통신, 무역행정문서, 전자적으로 행하여지는 무역’ 등을 정의하고 있다.⁶⁰⁾

특이한 점은 전자상거래에 대해 “다른 장에서의 당사국의 약속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장이 디지털제품이 전자적으로 전달되도록 허용할 의무를 그 당사국에게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자유로운 교역을 제한하고 있으며⁶¹⁾, 중소기업에 의한 전자상거래의 이용을 촉진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⁶²⁾

7. 한·중 FTA

제13장(전자상거래)에서 WTO의 관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⁶³⁾, 다른 장과 불합치하는 경우 다른 장이 우선한다고 밝히고 있으며⁶⁴⁾,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⁶⁵⁾, 전자상거래의 개인정보 보호⁶⁶⁾, 종이 없는 무역⁶⁷⁾, 전자상거래에 관한 협력⁶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의 규정을 통해 ‘전자인증, 전자서명, 무역행정문서’ 등을 정의하고 있다.⁶⁹⁾

특이한 점은 ‘디지털제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전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각주규정을 통해 ‘서비스 무역으로 분류되는지 상품무역으로 분류되는지’에 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는 사실과⁷⁰⁾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제20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도⁷¹⁾ 다른 분쟁해결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55) 한·캐나다FTA 13.8조

56) 한·캐나다FTA 13.3조

57) 한·캐나다FTA 13.4조

58) 한·캐나다FTA 13.5조

59) 한·캐나다FTA 13.6조

60) 한·캐나다FTA 13.9조

61) 한·캐나다FTA 13.1조 제2항

62) 한·캐나다FTA 13.7조

63) 한·중FTA 13.3조

64) 한·중FTA 13.2조

65) 한·중FTA 13.4조

66) 한·중FTA 13.5조

67) 한·중FTA 13.6조

68) 한·중FTA 13.7조

69) 한·중FTA 13.8조

70) 한·중FTA 13.3조 각주

71) 한·중FTA 13.9조

8. 한·베트남 FTA

제10장(전자상거래)에서 WTO의 규정에 따라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내국세, 수수료, 국내부과금은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인증, 전자서명 및 디지털 인증서⁷²⁾, 온라인 소비자 보호⁷³⁾, 개인정보 보호⁷⁴⁾, 종이 없는 무역⁷⁵⁾, 전자상거래에 관한 협력⁷⁶⁾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의규정을 통해 ‘디지털 인증서, 전자서명, 무역행정 문서’ 등을 정의하고 있다.⁷⁷⁾

특이한 점은 ‘전자적 전송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디지털제품’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1996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 모델법]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를 규율하는 국내법 및 규정을 채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⁷⁸⁾

9. 한·콜롬비아 FTA

제12장(전자상거래)에서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제품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해 관세, 수수료,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내국세, 국내부과금은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⁷⁹⁾,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⁸⁰⁾, 종이 없는 무역 행정⁸¹⁾, 소비자 보호⁸²⁾, 협력⁸³⁾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자료, 무역행정문서,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서신’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⁸⁴⁾ 불일치의 한도에서 다른 장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⁸⁵⁾

특이한 점은 ‘디지털제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제품의 수입 또는 수출’이라는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과⁸⁶⁾ 전자상거래 이용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애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⁸⁷⁾

72) 한·베트남FTA 10.3조

73) 한·베트남FTA 10.5조

74) 한·베트남FTA 10.6조

75) 한·베트남FTA 10.7조

76) 한·베트남FTA 10.8조

77) 한·베트남FTA 10.9조

78) 한·베트남FTA 10.4조. 반면 대부분의 FTA에서는 “WTO의 규정 및 각료회의결정을 원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79) 한·콜롬비아FTA 12.2조

80) 한·콜롬비아FTA 12.3조

81) 한·콜롬비아FTA 12.4조

82) 한·콜롬비아FTA 12.5조

83) 한·콜롬비아FTA 12.6조

84) 한·콜롬비아FTA 12.8조

85) 한·콜롬비아FTA 12.7조

86) 이에 대해 전자상거래(e-commerce)는 온라인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거래를 지칭하며, 기술발달에 따라 범위가 확산되는 추세로 협정문에서 특정하게 정의하지는 않았다고 한다.(한·콜롬비아FTA 상세설명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2.12)

10. 주요조항의 비교

한국이 체결·시행하고 있는 FTA의 전자상거래 규정은 각기 다른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며, 주요 내용별로 각 FTA가 취하고 있는 입장을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 2> 한국 FTA의 주요내용별 비교

FTA	규정 무관세	정의 규정	분류유보 (각주)	적용 범위 ⁸⁸⁾	우선 순위	비차별 대우	종이 없는 무역	전자인증 /전자서명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한·싱가포르	○	○		○	△	○				
한·EU	○		○							
한·페루	○	○			○		○	○	○	○
한·미국	○	○	○	○	△	○	○	○	○	○
한·호주	○	○			○	△ ⁸⁹⁾	○	○	○	○
한·캐나다	○	○			○		○		○	○
한·중국	○	○	○		○		○	○	○	
한·베트남	○	○				△ ⁹⁰⁾	○	○	○	○
한·콜롬비아	○	○			○		○		○	○

△는 간접적으로 규정한 경우

IV. 분석 및 시사점

이상의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이 맺은 FTA에서 전자상거래를 다루는 방식은 통일적이지 않고, 각 FTA에 따라 즉 계약상대국에 따라 다양하다.

관세부과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1998년 WTO 제2차 각료회의의 결정에 따라, 무체물인 디지털제품(또는 전자적 전송)에 대해서는 ‘잠정적⁹¹⁾ 무관세’를 채택하고 있지만 유체물을 때

87) 한·콜롬비아FTA 12.6조 제2항

88) 콘텐츠소비가 그 편성에 대하여 선택권을 갖고 있지 않은 전자적 전송(TV, 라디오 등)에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

89) 제15.4조(국내규제) 제1항: 각 당사국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범법과, 적절한 경우, 그 밖의 국제기준·지침 및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를 규제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90) 제10.4조(국내규제의 틀): 각 당사국은 『1996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 모델법』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를 규율하는 자국의 국내법 및 규정을 채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91) 미국의 경우 자신이 주도하는 FTA에서 사실상 ‘영구적 무관세’를 채택하고 있지만, 트럼프행정부 출범 이후 모든

개체로 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부과되는 내국세와 수수료 등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의 대상으로서 ‘디지털제품’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FTA와 규정하지 않고 있는 FTA가 혼재하고 있으며, ‘디지털제품’과 그 전달매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규정을 가진 FTA도 있으며, ‘전자상거래’의 대상을 ‘디지털제품’으로 하는 경우와 ‘전자적 전송’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모든 FTA에서 이러한 규정들이 전자상거래에 대해 ‘상품교역’으로 분류되는지 또는 ‘서비스교역’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유보하고 있으며⁹²⁾, 상당수의 FTA에서는 전자상거래 장의 규정이 다른 장의 규정과 불합치하는 경우 다른 장의 규정이 우선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구체적인, 개별적인 주요쟁점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관세 및 내국세

1) 한국이 체결한 전자상거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모든 FTA에서는 ‘무관세’를 규정하고 있다. 즉 전자상거래의 분류에 대한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고 모든 FTA에서는 무형의 전자상거래에 대해 관세(관세, 기타세금 및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전달매체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⁹³⁾

2) 한국이 체결한 전자상거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모든 FTA에서는 내국세 등에 관해서는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자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과세행정은 각국의 주권사항으로서 국내법에 의해 규율할 사항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2. ‘디지털제품’의 정의

1) 디지털제품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FTA는 한·싱가포르 FTA, 한·페루 FTA, 한·미 FTA, 한·캐나다 FTA이며 공통적으로 ‘전달 매체에 고정되거나 전자적으로 전송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적으로 부호화된 컴퓨터 프로그램·문자열·동영상·이미지·녹음 또는 그 밖의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FTA를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므로, 추후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92) 전자상거래에 대해 미국은 ‘상품무역’으로 분류하고자 하지만, EU 등 유럽 쪽에서는 ‘서비스’로 분류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한국과 맺은 FTA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93) 현재 HS에서는 디지털제품 또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코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FTA에서 무관세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2) 다만 한·싱가포르 FTA와 한·미 FTA는 ‘전달매체에 고정되거나 전자적으로 전송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라는 문구를 통해 ‘무형적인’ 디지털제품과 ‘유형적인’ 전달매체를 구별하고 있으며, 디지털제품이 전달매체에 고정되어 전달되더라도 전달매체에 체화되어 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형적인 디지털제품은 전달매체와 별개의 독립된 제품으로서의 성질을 유지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3) ‘디지털제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FTA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전달(한·EU FTA, 한·중 FTA), 전자적 전송(한·호주 FTA), 전자적 전송물(한·베트남 FTA)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에 대해 ‘서비스’로 분류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3. 전자상거래의 분류와 적용법규

1) 전자상거래에 대해 ‘상품무역’으로 분류되는지 ‘서비스무역’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주석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판단을 유보하는 경우⁹⁴⁾도 있다.

2) 한·EU FTA에서는 ‘전자상거래’를 독립된 장으로 다루지 않고 ‘제7장 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에서 ‘서비스 무역·설립’과 함께 다룸으로써 전자상거래를 ‘서비스’로 분류하고자 하는 의도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국제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주제이고, 한국의 경우 어떻게 분류할지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로 각주규정⁹⁵⁾을 통해 ‘대한민국의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3) 이상과 같이 한국이 체결·시행하고 있는 FTA의 ‘전자상거래’규정은 그 대상에 대한 개념 및 분류가 통일적이지 않고, 적용법규 또한 GATT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GATS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으며, 규정하는 내용 또한 구체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추상적인 선언 이상의 효력을 갖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대부분의 FTA에서는 전자상거래의 규정과 다른 장(국경 간 서비스 무역, 투자, 금융서비스 등)의 규정이 충돌할 경우, 다른 장의 규정이 우선한다는 규정을 둬으로써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을 상품 또는 서비스 교역에 관한 규정에 대해 보완적 성격을 갖도록 하고 있다.⁹⁶⁾

94) 한·EU FTA 7.48조 제3항 각주, 한·미 FTA 15.9조 각주, 한·중 FTA 13.3조 각주

95) 한·EU FTA 7.48조 제3항 각주: 단, 이 장(제 7장 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었다는 것이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전달이 서비스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또는 상품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각주 규정)

96) 한·싱가포르 FTA 14.3조, 한·페루 FTA 14.2조, 한·미 FTA 15.2조, 한·호주 FTA 15.2조, 한·캐나다 FTA 13.1조 및 13.8조, 한·중 FTA 13.2조, 한·콜롬비아 FTA 12.7조

4. 기타 및 주의할 규정

1) 안전한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해 대다수의 FTA에서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전자인증 및 디지털인증서 또는 전자서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종이 없는 무역의 증진을 위해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에 대해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2) 유일하게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상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대상인 디지털제품에 대해 ‘상품무역’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의도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추후 ‘디지털제품’에 대한 ‘원산지판정기준’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현재는 모든 국가가 전자상거래에 대해 무관세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FTA를 체결한 국가와 체결하지 않은 국가 간에 차이가 없는 상황이지만, ‘원산지상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추후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 시행될 경우 또는 관세 이외의 FTA협정에 따른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경우 ‘원산지판정기준’의 설정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⁹⁷⁾

3) 유일하게 한·캐나다 FTA에서는 “다른 장에서의 당사국의 약속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장이 디지털제품이 전자적으로 전달되도록 허용할 의무를 그 당사국에게 부과하지 않는다.”⁹⁸⁾고 규정함으로써, 즉 GATT의 네거티브 방식이 아니라 GATS의 포지티브 방식에 가까운 태도를 취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디지털제품’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⁹⁹⁾ 사용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상품’으로 간주하는 견해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분류문제에 대해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4) 한·캐나다 FTA와 한·콜롬비아 FTA에서는 ‘중소기업에 의한 전자상거래의 이용을 촉진하는 규정’¹⁰⁰⁾과 ‘미소 및 중소기업의 애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는 규정¹⁰¹⁾을 두고 있는데, 전자상거래가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게 더 큰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5) 유일하게 한·중FTA에서는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13장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20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¹⁰²⁾고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FTA상의 분쟁해결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도 대안적인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추후 논란이 될 수 있다.¹⁰³⁾

97) 유형적인 재화에 대한 원산지판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수입물품의 전부가 한 국가 내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제품)과 실질적변형기준(세변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이 있지만, 이 기준을 디지털재화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 WTO에서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98) 한·캐나다 FTA 13.1조 제2항

99) 한·캐나다 FTA 13.9조 제2항

100) 한·캐나다FTA 13.7조

101) 한·콜롬비아FTA 12.6조 제2항

102) 한·중FTA 13.9조

V.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이 체결·시행하고 있는 FTA의 전자상거래 규정은 공통점과 개별적인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공통점으로는 전자상거래의 대상인 ‘무체물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EU FTA를 제외¹⁰⁴⁾ 모든 FTA에서 전자상거래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¹⁰⁵⁾ 또한 약간의 예외가 있지만, 전자상거래 장의 규정과 다른 장의 규정이 충돌할 경우 다른 장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중이 없는 무역, 전자인증/전자서명,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보호 등’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분류’와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각주 규정을 통해 유보하거나 관련조항을 두지 않고 있으며, 비차별대우에 대한 입장도 국가별로 다르게 규정함으로써 한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며, 한·중FTA에서는 소비자보호 규정도 없고 분쟁해결방법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이 체결·시행하고 있는 FTA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의 통일성이 부족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이유는 WTO에서 국제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각 FTA에서 개별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고, 상대국의 IT기술의 발전 정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점 및 경제적 효과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협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한 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추후 더 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익을 추구할 필요가 있는데, FTA별로 각기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주장할 수 없는 상태이며, 추후 국제무대에서 국익의 추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둘째, 전자상거래의 개념, 분류, 적용법규 등에 대해 각 FTA별로 다르게 규정함으로써 추후 정책적 대응도 각 FTA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고, 정책의 수

103) 한·중FTA가 이러한 태도를 취한 이유는 13.3조 각주 규정(*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전달이 서비스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또는 상품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양 당사국의 입장을 전해하지 않는다. * 현재의 관행은 [세계무역기구 발리 각료회의 결정(WT/MIN(13)/32-WT/L/907)의 전자상거래 작업계획] 제 5항과 합치되게 유지될 것이다. * 양 당사국은 이 사안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결정의 어떠한 변경과도 합치되게, 관행을 조정할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데,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WTO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르겠다는 암묵적 의사표시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쟁 발생 시 어떠한 절차를 따라 해결한다는 규정도 없이, 제20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104) 한·EU FTA의 전자상거래 규정에서는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독립적인 장이 아니라 ‘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같은 이유로 우선순위 규정이 없는 것도 예외라고 볼 수 없다.

105) 모든 정의규정에서 ‘디지털상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립 및 집행과정에서 경제적·행정적 낭비가 발생할 것이다. 셋째, 일관성과 체계성이 부족한 FTA의 전자상거래 규정¹⁰⁶⁾은 불확실성을 증가시킴으로써 학계의 연구의욕과 산업현장의 투자욕을 저하시킴으로써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이 체결·시행하고 있는 FTA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논의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WTO의 작업계획의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점, 분석 대상이 한국이 체결·시행하고 있는 FTA에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은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전자상거래에 관해 WTO 등 국제기구의 논의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국가가 체결·시행하고 있는 FTA의 전자상거래 규정을 검토·분석하여 한국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적극적·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권현호, “WTO에서의 디지털 상품교역에 대한 적용규범”, 『국제법학회논총』 제49권 제1호, 2004, pp.87-108.
- 김정곤·나승권·장종문·이성희·이민영, “국제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5.
- 김철호, “국제무역 패러다임의 변화와 전자무역관습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5권 제1호, 2014, pp.123-142.
- 문영수·박복재 “주요 FTA 상대국과의 디지털 제품 국제경쟁력 분석”, 『통상정보연구』 제13권 제2호, 2011, pp.205-234.
- 박복재·문영수, “디지털 콘텐츠 교역의 확산이 조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가 간 비교 연구”, 『전자무역연구』 제10권 제4호, 2012, pp.21-37.
- 박영기·김종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국제거래 확산에 따른 관세누수 추정과 경제에 미

106) 지엽적이긴 하지만, ‘번역’의 문제도 체계적인 이해와 연구의 방해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세, 수수료, 부과금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번역보다는 ‘관세, 기타 세금 및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다. 또한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한·호주 FTA 제15.4조)’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한·베트남 FTA 제10.4조)’이라고 서로 다르게 번역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FTA 협정문의 번역에는 일관성이 부족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무역과 법률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한글협정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6권 4호, 2015, pp.71-89.
- 박형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관세부과 원리의 쟁점과 과세방법 고찰”,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1, pp.53-68.
- 서민교, “전자상거래에 관한 한·미 FTA의 평가와 향후 과제”, 「e-비즈니스연구」 제9권 제2호 2008, pp.87-110.
- 안병수, “전자상거래무역 확산을 위한 법률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9권 제1호, 2017, pp.3-21
- 윤창인, “FTA협상 관련 한국의 전자상거래 주요 쟁점 및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07-12, 2007.
- 한민정, “한국의 TPP참여전략에 관한 연구: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제15권 제1호, 2013, pp.309-330.
- Lior Herman, “Multilateralising Regionalism: The Case of E-Commerce”, *OECD Trade Policy Papers*, No. 99, OECD Publishing, 2010.
- Susanne Teltscher, “From Physical to Digital Delivery: Definition, Scope and Tariff Revenue Implications of Electronic Goods Trading”, *Proceedings of the 34th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 2001.
- WTO,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Adopted by the General Council on 25 September 1998.
- WT/MIN(98)/DEC/2. MINISTERIAL CONFERENCE Second Session Geneva, 18 and 20 May 1998.
- WT/MIN(15)/42/WT/L/977. MINISTERIAL CONFERENCE Tenth Session Nairobi, 15-18 December 2015.
- FTA강국코리아(<http://www.fta.go.kr>)
- WTO www.wto.org/ Trade topics other topics / Electronic Commerce

ABSTRACT

A Comparison & Analysis of Electronic Commerce of Korea's FTA

Yun-Keun Kim* · Bok-Jae Park**

Though electronic commerce has grown rapidly in international trade, there is no basic consensus for its concept and rule applied. So WTO has done practice of not imposing customs duties on digital contents and been researching overall on electronic commerce through Work Program while many countries of the world attempt to obtain their interests by stipulating chapter of electronic commerce in their FTAs.

This paper has compared and analysed chapter of electronic commerce in all the FTAs which Korea has signed and enforced. Korea's FTA stipulates commonly no customs duties, the other chapter's priority when chapter of electronic commerce conflicts the other chapter, electronic authentication,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consumer protection. But it has weak consistency and framework as it has different provisions for the objects of electronic commerce respectively, reserves classification & applied rule for electronic commerce, stipulates differently on non discrimination treatment and so on.

Korea should participate in the research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cluding WTO and cope actively and elastically by analysing the provisions of electronic commerce of the other countries' FTA such as USA, EU, CHINA and so on.

Key Words : electronic commerce, FTA, WTO, digital products, customs duties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First Author)

** Professor, Division of Logistics & Commerc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